

● 제321회 ●
서울특별시의회(정례회)
제5차 보건복지위원회

서울특별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
민간위탁(재위탁) 동의안
검 토 보 고 서

2023. 11. 24

보 건 복 지 위 원 회
수 석 전 문 위 원

【 서울특별시장 제출 】

의안번호 1426

I. 동의안 개요

1. 제출자 및 제출경과

- 가. 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- 나. 제출일 : 2023. 10. 16.
- 다. 회부일 : 2023. 10. 23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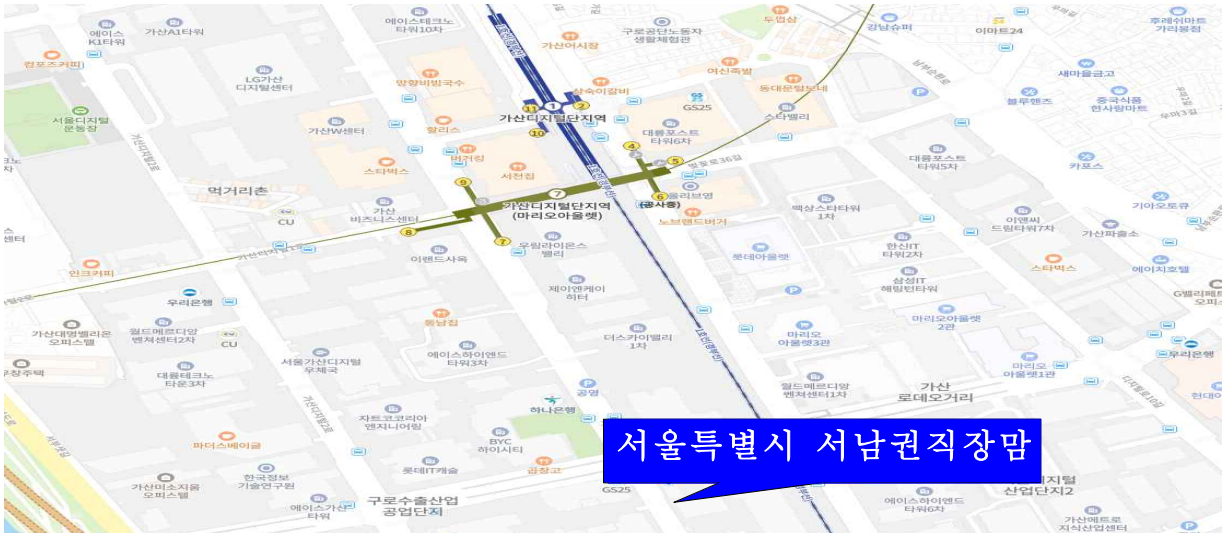
가. 제안이유

- 서울특별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는 여성의 노동권 및 모성·부성권리 보호와 경력단절 예방 및 일·생활 균형을 위하여 「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」 제45조에 의거하여 설치·운영하는 시설로서,
- 직장맘지원센터 운영 사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지식과 노하우, 인적 자원 등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 법인(단체)에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,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- (1) 위탁사무명 : 서울특별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운영
- (2)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
 - 추진근거
 -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제18조(일·생활 균형 지원) 제 8호 및 제45조(설치 및 기능)
 -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(민간위탁 사무내용)
 - 민간위탁 필요성
 - 동 센터 운영은 직장맘·대디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공인노무사, 노동전문변호사 등 전문인력의 심층상담과 분쟁해결 관련 특수한 지식과 기술이 요구되는 사무로, 전문성을 갖춘 법인(단체)에 위탁 운영하여 사업추진의 전문성 확보 및 효율성 강화 필요
- (3) 위탁사무 : 서울특별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운영 전반
 - 직장맘의 모성권리보호 상담, 교육, 홍보 등 지원사업
 - 직장여성의 남녀고용평등 지원사업
 - 일·생활 균형 및 가족친화 사회문화 조성사업
 - 직장부모를 위한 자녀 돌봄 지원사업
 -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(4) 위탁시설 개요
 - 시설명 : 서울특별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
 - 개소일자 : 2016. 5. 1.

- 소재지 :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20(가산동)
- 시설규모 : 면적 150㎡(3층)
- 위치도



- (5) 위탁기간 : 3년(2024.5.1. ~ 2027.4.30.)
- (6) 수탁기관 선정방법 : 재위탁(공개모집)
- (7) 소요예산 : 금595백만원(2023년 예산)
 - 인건비 446백만원, 운영비 41.2백만원, 사업비 100.2백만원, 일반관리비 0.6백만원, 민간위탁사업비 7백만원
- (8)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: 적정(권고)
 - 2023년 제7차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(2023.9.20.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제18조 및 제45조 등

제18조(일·생활 균형 지원) 시장은 여성과 남성이 일과 생활을 균형있게 할 수 있도록

록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8. 직장맘지원센터 지원 확충 및 활성화

제45조(설치 및 기능) ① 시장은 제18조제8호에 따라 여성의 노동권 및 모성권리를 보호하고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일·생활 균형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직장맘지원센터(이하 “직장맘지원센터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② 직장맘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

1. 직장맘의 모성권리보호 상담, 교육, 홍보 등 지원사업
2. 직장여성의 남녀고용평등 지원사업
3. 일·생활 균형 및 가족친화 사회문화 조성사업
4. 직장부모를 위한 자녀 돌봄 지원사업
5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46조(직장맘지원센터에 대한 지원) 시장은 직장맘지원센터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으며, 예산의 범위에서 직장맘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47조(지도·점검 등) 시장은 직장맘지원센터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「서울특별시 행정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16조에 따라 수탁기관에 대하여 지도·점검 등을 할 수 있다.

○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9호

제6조(민간위탁 사무내용)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9. 그 밖에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

나. 예산조치 : 2024년 민간위탁 예산안 편성 중

※ 예산은 예산편성(심의) 등을 통하여 변경될 수 있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II. 검토의견 (수석전문위원 주병준)

1 동의안의 개요

-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 기간 만료('24.4.30.) 도래에 따라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(이하 “「민간위탁조례」”라 함)제4조의3제1항¹⁾에 의거 재위탁을 추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된 것임.
- 시장이 위탁하려는 사무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음.
 - 직장맘의 모·부성권리보호 상담, 교육, 홍보 등 지원사업
 - 직장여성의 남녀고용평등 지원사업
 - 일·생활 균형 및 가족친화 사회문화 조성사업
 -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서울특별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함)는 여성의 노동권 및 모성권리를 보호하고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「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」 제45조²⁾에 따라 설치·운영되는 시설로 직장맘 고

1)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3(의회동의 및 보고)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와 위탁사무의 중요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, 제2조제4호에 따른 재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의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 <개정 2021.3.25, 2021.12.30>

2) 「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」 제45조(설치 및 기능) ① 시장은 제18조제8호에 따라 여성의 노동권 및 모성권리를 보호하고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일·생활 균형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직장맘지원센터(이하 “직장맘지원센터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② 직장맘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

1. 직장맘의 모성권리보호 상담, 교육, 홍보 등 지원사업
2. 직장여성의 남녀고용평등 지원사업
3. 일·생활 균형 및 가족친화 사회문화 조성사업
4. 직장부모를 위한 자녀 돌봄 지원사업
5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충 해결을 근거리 밀착하여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권역별로 동부권 직장맘지원센터(광진구 소재), 서북권직장맘지원센터(은평구 소재)가 설치되어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(붙임1).

- 센터의 시설관리 및 운영에 대해 2016년 최초 설치한 이후 계속해서 수탁하여 운영해 왔으며 센터의 운영 및 민간위탁 추진 현황은 아래와 같음.

<센터 운영 현황 및 실적>

소재지	면적(m ²)	연간사업비(천원)	위탁기간	운영주체
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20 (G밸리창업복지센터 3층)	150m ² (약 45평)	594,958천원 ('23년 기준)	'21.5.1~'24.4.30. (개소일: '16.5.1)	(사)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

(단위 : 명)

계	센터장	팀장	직원
8	1	2	5

(단위 : 건, 명)

합계('22년)	종합상담(건)				남녀고용평등(건)	일·생활균형(건/명)	자녀돌봄지원(건/명)	역량강화교육(명)
	소계	직장내	가족관계	개인				
9,739	7,066	6,869	102	95	74	1,771	69	759

<민간위탁 추진 현황>

구분	기간	수탁기관	선정방법
1차	‘16.5.1.~‘18.4.30.	(사)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	신규위탁(공모)
2차	‘18.5.1.~‘21.4.30.	(사)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	재위탁(공모)
3차	‘21.5.1.~‘24.4.30.	(사)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	재위탁(공모)

- 2023년 제3차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에서 한정된 예산에 지원단의 전문가를 모집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지만 지원단 및 상생 마케팅에 대해 단순하고 일회적으로 명수만을 목표로 설정해 활동 만족도 등에 대한 지표 반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음.
- 다만 종합성과평가 결과 80점으로 재계약 요건을 충족(75점 이상)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행기관은 동 사무의 위탁기간 만료 시 재위탁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있음.

<2023년 종합성과평가 주요내용>

주요성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현재 기관은 기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개별직원의 전문성에 근거한 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됨. 특히, 직장맘 지원을 위한 공인노무사 등의 전문성이 있는 인력을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됨 ▶ 한정된 예산에도 불구하고, 지원단의 전문가를 모집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음. 예를 들어, 노무사, 심리상담사 등을 모집하고 있고, 예산을 반영하여 지원단에 대한 목표 설정을 하고 있음
개선과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민간전문가 활용과 관련하여 활용의 내용을 일괄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아닌 기관의 목표와 어떻게 연계가 되는지 구체적인 결과지표 관련 성과가 무엇인지 기재할 필요가 있음 ▶ 각종 지원단 및 지역 상생 마케팅에 대한 정량적인 평가가 지표가 단순하고, 일회적임. 예를 들어, 지원단 명수만을 목표로 가지고 있으나, 이에 대한 활동 만족도 등에 대한 지표 반영도 필요함(활동 만족도 반영 필요함)

- 또한 2023년 제7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결과에서는 타 센터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운영실적 개선과 장기 수탁 중임에도 불구하고 예산 내 홍보비 비중이 높아 이에 대한 조정을 권고 받았음.

<2023년 제7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>

위탁사무명	유 형		수탁 기관	위탁 기간	심의 결과	비 고
서남권직장맘 지원센터 운영	사무형	재위탁	-	3년	적정 (권고)	[권고] - 타 센터 대비 서남권 센터 운영실적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으로 개선계획 필요 - 2016년부터 장기 수탁중임에도 불구하고 예산 내 홍보비 비중이 높은 편으로 조정 필요

2 민간위탁 대상사무 여부에 대한 타당성 검토

- 민간위탁의 대상으로 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것은, 행정권의 포기과 공익성 실현의 왜곡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법치국가의 원리상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범위와 한계를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음.
- 「지방자치법」 제117조제3항³⁾에서는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, 「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」 제45조제1항⁴⁾에 따라 시장의 명의로 설치·운영하고 있는 서

3) 「지방자치법」 제117조(사무의 위임 등)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4) 「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」 제45조(설치 및 기능) ① 시장은 제18조제8호에 따라 여성의 노동권 및 모성권리를 보호하고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일·생활 균형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직장맘지원센터(이하 "직장맘지원센터"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울특별시 직장맘지원센터는 시장의 사무라 할 것임.

- 「민간위탁조례」 제4조제1항제3호5)에 따르면 시장의 소관 사무 중 “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”를 법인·단체 등에 민간위탁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,
 - 직장맘들이 겪는 고충에 대하여 종합적인 상담 및 분쟁해결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, 그들의 권리보호를 위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전문성을 요구하는 직장맘지원센터의 운영은 민간위탁 사무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됨.
- 또한 「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」 제57조제1항6)에서 “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”라고 규정하고 있어 해당 사무는 민간위탁 사무로서의 법적 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됨.

3 종합 검토 의견

- 금번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를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려는 본 동의안은 법적인 측면에서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 할 것임.

5)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2.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- 3.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**
4.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

② 삭제

6) 「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」 제57조(사무의 위탁) ①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.

- 동 위탁사무는 직장맘상담 및 역량 강화, 임신·출산·육아기 직장맘의 모성보호, 관련 네트워크 구축 등의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그 사무의 특성상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다년간의 현장 경험에 기반한 서비스 제공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이의 노하우를 지닌 민간단체나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된다면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됨.

붙임	권역별 직장맘지원센터(3개소) 비교표		
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	--

구 분	동부권 직장맘지원센터	서남권 직장맘지원센터	서북권 직장맘지원센터
위 치	광진구 아차산로 30길 36, 동부여성발전센터 1층	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20, G밸리창업복지센터 3층	은평구 은평로 245, 녹번119안전센터 2층
규 모	122㎡(약37평)	150㎡(약45.5평)	506㎡(약153평)
최 초 운영일	2012. 4. 1.	2016. 5. 1.	2017.9.15.
인 원	8명(센터장 1, 팀장 2, 팀원 5) ※ 노무사 2명	8명(센터장 1, 팀장 2, 팀원 5) ※ 노무사 4명(센터장 포함)	7명(센터장 1, 팀장 2, 팀원 4) ※ 노무사 2명
위탁 기간	2021.1.1.~ 2023.12.31.(3년)	2021.5.1.~ 2024.4.30.(3년)	2022.9.15.~ 2025.9.14.(3년)
위탁 법인	성동희망나눔 (대표:이일순)	(사)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(대표:배현진, 이경석)	(사)노동희망 (대표:김장민)
사 업 내 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직장맘(대디) 고충(직장,가족,개인) 종합상담 및 권리구제 지원 ◦ 직장맘(대디) 역량강화 교육(노동법률 교육, 양육자 교육 등) ◦ 직장맘(대디) 지원 네트워크 구축 ◦ 센터 누리집 운영 및 사례집 등 책자 발간 ◦ 직장문화 개선 등 컨설팅 추진 ◦ 직장부모를 위한 자녀돌봄 프로그램 운영 ◦ SNS, 뉴스레터 등 홍보 추진 	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성평등노동인권지원단 운영 ◦ 직장맘 지킴이 운영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서남권경력단절예방지원단 운영 ◦ 모부성보호 영상 콘텐츠 개발 ◦ 직장맘 권리구조대 운영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서북권성평등노동인권지원단 운영 ◦ 서북권 직장맘튼튼맵 사업 추진